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48
------	-----

2023.04.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김지향 의원 외 2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4.26.)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지향 의원)

1. 제안이유

- 과학관의 운영현황에 맞춰 시설물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관람료 감면 등을 통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하기 위한 관람료

감면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과학관의 독립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과학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내용 수정
(안 제2조 및 제14조).

나. 관람료 면제 외 감면에 대한 조항이 없어 신설(안 제6조제2항).

다. 전문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7조(관장)에 맞춰 권한의 위임 조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이하 “과학관”)의 시설물 관련 규정을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 명칭 등에 맞춰 정비하고, 관람료 감면에 대한 위임 규정을 확대 하며, 과학관 운영 권한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서울특별시립과학관 현황

- 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해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관(2017.5.19.)됨.

<과학관 개요>

○ 위 치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 규 모	부지면적 25,875㎡ / 연면적 12,376㎡ / 전시면적 4,260㎡	
○ 총공사비	423억 4천 9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예산현황	30억 1천 7백만원(2023년 기준)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옥 상	3,429.97	옥상정원, 데크쉼터, 태양광 시설
지상 3층	1,528.09	상설전시실(R), 1교육실(생물), 2교육실(화학), 3교육실(지구과학), 교육운영사무실, 북&톡(대기실)
지상 2층	3,429.97	상설전시실(O, B), Yy어린이전시실, 열린방(자원봉사실), 직원사무실, 전체관측실, 데크쉼터
지상 1층	4,217.34	상설전시실(G), Y어린이전시실, 토네이도, 메이커스튜디오, 사이언스홀(강당), 사이언스숍, 도서실, 4교육실(물리), 운영사무실, 아이디어 제작소, 수장고, 안내/매표소, 아기쉼터
지하 1층	3,201.02	주차장,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직원휴게실, 샤워장

- 개관 이후 2023년 3월까지 관람객은 총 74만 9천여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4억 7천 9백여만원임.

<과학관 연도별 관람객과 관람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3.	합계
관람객수	170,585	213,190	216,987	29,391	33,717	66,589	19,241	749,700
관람료 수입	107,196	113,530	106,327	20,511	38,218	70,394	23,377	479,553

- 한편, 올해 11월에는 AI, VR/AR, 홀로그램 등 최신 로봇과학기술 체험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과학관의 분관으로 개관될 예정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요>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25
- 규 모 : 부지면적 2,500㎡, 연면적 7,405㎡, 전시면적 2,000㎡,
- 총공사비 : 416억 9천 7백만원(시비 100%)
- 주요시설

층 별	면적(㎡)	주 요 시 설
지상 4층	828.39㎡	기획전시실
지상 3층	1,192.66㎡	상설전시실 1·2
지상 2층	1,074.04㎡	체험공간, 사무실, 회의실
지상 1층	1,003.38㎡	로비, 카페, 시모빌리티존, 유지엄샵, 편의시설
지하 1층	1,399.89㎡	주차장, 방재센터
지하 2층	1,906.99㎡	주차장, 기계·전기실, 정화조, 수장고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1) 시설 명칭 현행화(안 제2조, 안 제14조)

- 개정안은 과학관의 대관 시설물과 편의시설 명칭을 각각 현재 사용 목적과 명칭에 맞춰 현행화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대관자”란 시설물(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전시실, 강당 등)----- -----.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의무실, 수유실, 유아차·휠체어 대여소 4. (생 략)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 ----- -----.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 4. (현행과 같음)

- 현재 대관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전시실, 강당’ 이나 조례에서는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로 표기하면서 과학관 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비함(안 제2조).
- 또한, 의약품 비치 외에 의무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의무실의 명칭을 당직실로 변경하고 관람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 등’ 에서 의무실을 삭제함(안 제14조).
- 다만, 2022년 서울시 기관운영감사(2022.4.25.~5.30.)에서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무실 운영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2022.12.)하였는데 이러한 조치가 감사 지적사항을 적절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시됨.

(2) 관람료 감면에 대한 시장 위임 규정 정비(안 제6조)

- 개정안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9. <u>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u></p> <p>②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기준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상세한 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조례에서는 관람료를 성인 2천원, 청소년과 어린이 1천원으로 정하고 있음(별표).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30명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 ~ 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 ~ 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 ~ 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 현행 조례에는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감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과 관련된 한시적 감액규정 외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이에, 개정안은 관람료 면제에 관한 시장 위임 규정을 관람료 감면 전반으로 확대 정비함.

-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람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 그러나 관람료 감면의 대상은 해석상 논란이 없어야 하고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조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¹⁾ 시장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수정이 요구됨.

(3) 권한의 위임(안 제18조 신설)

- 개정안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 ▶ 관람료 감면, ▶ 대관 허가와 대관료 감면, ▶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 위탁운영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과학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²⁾에 따르면, 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1) 이용료 감면 요건은 실질적인 집행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고 이용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취지, 공공시설의 목적,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감면 대상 간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어떠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바, 사용자 감면의 대상은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법제처 2020. 8. 4. 의견20-0185 의견 제시 사례)

2)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³⁾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과학관의 시설 운영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권한 위임은 민원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인 반복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위임⁴⁾할 수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즉, 개정안에 따를 경우 관장이 관람료 감면 등에 대한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관람료 감면을 스스로 결정·집행하게 되므로 위임자인 단체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위임 내용을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함.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과학관의 대관 시설과 편의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보임.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을 말함.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 또한,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관람료 감면과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은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자율과 통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관람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과학의 날·어린이 날·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
-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개관 및 휴관, 관람료 감면,

대관허가와 대관료 감면,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제한함(안 제18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48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과학관의 관람료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관람료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과학의 날 · 어린이 날 · 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
- 과학관 관장에게 위임하는 시장의 권한을 개관 및 휴관, 관람료 감면, 대관 허가와 대관료 감면,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 판매시설 등의 설치 · 운영으로 제한함(안 제18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11. 과학의 날·어린이 날·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12.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4.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권한”을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
2.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
3.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
4.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
6.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8.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9.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p> <p>②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u> [조례 제710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신설></p>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삭제></p> <p>② <u>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p> <p>10.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p> <p>11. <u>과학의 날·어린이 날·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u></p> <p>12.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u>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p> <p>2. 「<u>한부모가족지원법</u>」 제5</p>

<p><신 설></p> <p><신 설></p>	<p>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신 설></p>	<p>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p> <p>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p> <p>4.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p> <p>제18조(권한의 위임) ----- -----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 -----.</p> <p>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p> <p>2.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p> <p>3.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p> <p>4.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p> <p>5.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p> <p>6.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p>
---------------------------------------	--	--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 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 을 “(전시실, 강당 등)”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

11. 과학의 날·어린이 날·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

② 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4.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제3호 중 “의무실, 수유실, 유아차·휠체어 대여소” 를 “수유실, 유아차·휠체어 대여소” 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
2.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
3.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
4.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
6.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대관자</u>”란 시설물(<u>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등</u>)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4. (생 략)</p>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8.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9. (생 략)</p> <p>②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전시실, 강당 등</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p> <p>10. <u>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u></p> <p>11. <u>과학의 날·어린이 날·문화가 있는 날 방문객</u></p> <p>12. (현행 제9호와 같음)</p> <p>② <u>시장은 과학관 관람객 증대, 공공목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u></p>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관람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조례 제7108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시장은 과학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학관 내·외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의무실, 수유실, 유아차·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된 사람
4. 그 밖에 과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 -----

-----.

1. · 2. (현행과 같음)
3. 수유실, 유아차·휠체어 대

체어 대여소

4. (생략)

<신설>

여소

4.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하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관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관 및 휴관
2. 제6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
3. 제10조에 따른 대관허가
4. 제12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대관에 관한 권리의 양도 승인
6. 제14조에 따른 판매시설 등의 설치·운영